

『구미시 평생교육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2월 12일

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평생교육원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-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
-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 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- 서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

- 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 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 개정안은
사용료의 반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
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
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